“계약 단계부터 주의”…인테리어 공사 하자·분쟁 잇따라

실내건축 피해 3년간 2243건…지역서도 56건 접수
하자보수 불만 56.9%…합의 성립은 35.8%에 그쳐

#1 소비자 A씨는 2024년 10월 사업자와 9200만원 규모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면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당초 구두로 약속한 것과 다른 자재가 사용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사업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2 B씨는 지난해 8월 497만5000원에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 과정에서 계약한 600×600㎜ 규격과 다른 600×300㎜ 타일이 사용됐고, 타일 들뜸과 줄눈 불량도 발생했다. 사업자가 재시공을 약속했지만 시공된 타일을 철거한 뒤 연락이 끊겼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지만 약속한 자재가 사용되지 않거나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사업자 선정과 계약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실내건축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24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지역에서도 56건이 접수됐다.

전국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551건, 지난해 79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3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352건보다 22.2% 늘었다.

피해 유형 가운데서는 하자보수 불만이 1275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한 자재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이 565건(25.2%), 계약해제가 297건(13.2%)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금액별로는 500만원 미만이 1208건(54.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500만원 이상은 595건(26.8%),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257건(11.6%)이었다.

특히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한 피해도 발생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실제 합의가 이뤄지는 비율도 낮았다.

전체 2243건 중 하자보수와 계약이행, 환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된 건은 803건으로 35.8%에 그쳤다. 나머지 1440건(64.2%)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특히 1500만원 이상 공사의 합의 성립률은 33.3%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사업자가 자체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보수 방법을 두고 소비자와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가을 이사철에는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계약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계약할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서 작성도 필수다. 공사 범위와 기간뿐 아니라 설계도면, 자재의 종류와 규격 등 세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문서로 남겨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 하자가 확인된 경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방문판매 방식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스마트미디어컴퍼니·브릿지웍스, 아파트 상생사업 ‘맞손’

공기청정·살균기 무상 지원
광고 수익 일부 단지 환원

스마트미디어컴퍼니는 최근 브릿지웍스와 아파트 단지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단지모아’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미디어컴퍼니(대표 문정수)가 생활형 플랫폼 기업 브릿지웍스와 손잡고 아파트 단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광고 수익 공유를 결합한 상생 사업에 나선다.

스마트미디어컴퍼니는 최근 브릿지웍스와 아파트 단지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단지모아’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스마트미디어컴퍼니는 자체 제조한 디스플레이 탑재형 공기청정·살균기를 브릿지웍스의 아파트 생활 플랫폼 단지모아 도입 단지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기기 구매 부담 없이 공용 공간에 공기청정·살균 기능과 디지털 정보 전달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5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공기청정·살균기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용 25인치 제품이다. 해당 기기는 공기청정·살균 기능을 수행하면서 화면을 통해 단지 공지사항과 생활 밀착형 광고 등을 송출한다.

입주민의 이동이 잦은 로비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환경 관리와 정보 전달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광고 매체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광고 수익을 단지와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기기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일부를 해당 아파트에 기부해 공용 공간의 환경 개선과 함께 단지의 부가 수익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브릿지웍스가 운영하는 단지모아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구매와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이다. 양사는 스마트미디어컴퍼니의 제품 제조 역량과 브릿지웍스의 플랫폼을 결합해 입주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환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문정수 스마트미디어컴퍼니 대표는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과 생활 플랫폼을 결합해 아파트 주거 공간을 디지털 생활 서비스 공간으로 확장하고, 단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미디어컴퍼니는 공기청정기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한 기후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본사를 이전한 첫 벤처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항공사 95.5% 결항·지연 배상 규정 미흡

지난해 항공여객 피해구제 3201건…전년보다 26.4%↑

항공편 결항과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 항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항공사에 유리한 면책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01건으로 전년 2532건보다 26.4%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5건, 2022년 1126건, 2023년 1705건, 2024년 2532건, 2025년 320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전체 신청 가운데 운송 불이행·지연에 따른 피해는 565건으로 17.7%를 차지했다.

또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운송약관에서는 항공사 귀책에 따른 결항 시 운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긴 곳은 21곳으로 전체의 95.5%에 달했다.

항공편이 취소되면 항공권 환불을 받더라도 현지 숙박비나 렌터카, 관광시설 입장권 등의 취소·변경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편 운송 불이행·지연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배상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항공사 약관에 국제협약보다 낮은 배상 한도를 설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외항사 2곳은 여객 사망·부상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를 국제항공운송 관련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15만1880 특별인출권(SDR)보다 낮은 12만8821SDR로 규정했다.

조사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국제협약상 배상 한도는 약 3억1464만원으로, 해당 외항사의 약관상 한도는 이보다 약 4800만원 낮았다.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항공사의 책임과 배상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항공사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협약상 배상 한도보다 낮게 설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 판매로 인한 탑승 거부와 관련해서도 일부 외항사의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 약관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항공사 22곳 가운데 12곳(54.5%)은 ‘예측하지 못한 사실’, ‘노동력 부족’, ‘기장 서명 후 발생한 기술적 문제’ 등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사유를 면책 조항에 포함했다.

윤용성 기자

상 속 한 정 승 인 공 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망 송천은(350501-1******)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 사건번호 : 2026느단 10551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공고인 : 송 영 철
- 한정승인심판결정일 : 2026년 10월 21일
-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2월 23일
- 연락처 : 전남광주 북구 장등길112번길62-2(장등동),(010-9967-0897)

2026년 10월 21일

광고문의

광남일보와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광남일보 신문 지면·홈페이지·온라인·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맞춤홍보 및 제작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해드립니다.

대표번호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e-mail gnilbo3@daum.net

세상과 함께,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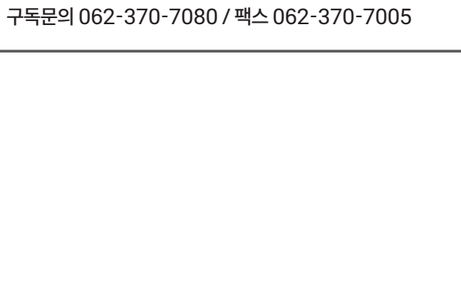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YouTube | 광남일보 iTV

전남광주의 생생한 뉴스와 현장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광남일보 iTV와 함께하세요!

LATEST NEWS
홀인원 최대 1억원! 전국 골퍼 252명 모인 광남일보·해피니스CC 골프대회
[광남일보 희망프로젝트-자살, 예방할 수 있습니다] (4)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청년창업, 미래를 열다] (5)대학생 창업이 뜬다

대표문의 : 062)370-7070